

알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도에 대한 설문조사-

울프, 라로크, 토머슨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 지(Summer-Autumm, 1987)에 실린 논문으로서 Rita Wolf(텍사스 크리스천대 강사), Tommy Thomason(동대 조교수), Paul La Rocque(남메소디스트대교수)가 공동조사한 "The Right to Know vs the Right of Privacy: Newspaper Identification of Crime Victims"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이자 주

I. 문제의 제기

범죄보도 뉴스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한 1830년대 이래, 언론인들은 공공기록에 속하는 모든 범죄관련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공중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난 십년 동안 독자와 언론인들은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일률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논쟁점에 집중되어 왔다. 첫째,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곤경에 빠진다면 어제 할 것인가? 둘째, 단지 운이 없어 그렇게 된 피해자들을 공중에게 노출시켜야 하는가? 셋째, 신문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가? 이러한 문제는 언론인들에게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앨버니 타임즈 유니온지(Albany Times Union)의 댄 린치(Dan Lynch)씨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 「정보, 특히 이름이나 주소 같은 정보를 보류 시킬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언제나 도박과 같다. 언론인들은 그들의 본능, 경향, 훈련 받은 바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뉴스를 다루는 몇몇 신문의 방식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범죄목격자의 이름 혹은 강도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게재하는 신문들이 비난받곤 한다. 그러한 기사는 독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지는 않다. 신문은 가능한 법적 제재를 우려하여 공개하기 난처한 개인적 사실을 발표하거나 혹은 개인의 은둔생활이나 독거 등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은 범죄피해자나 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에는,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생활의 문제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조사를 위해서 공개되고 있는 각종기록이 수반된다. 매체옹호자들은 공중의 알 권리를 단호히 주장해 왔다. 그 권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신문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범죄피해자의 공개에 보다 신중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언론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자의 3분의 2가 답변했다는 매체신뢰도에 대한 연구결과와²⁾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1983년 「범죄보도의 피해자를 위한 대통령 산하 전문위원회」(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Report)의 보고서,³⁾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중의 보다

넓어진 인식,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의 결성, 1983년 「미국 AP 통신계열사 편집국장 연합회」(Associated Press Managing Editors 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4) 등 여러가지 요인이 신문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해지도록 만든 것 같다. 언론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문제에 관련된 연구 이외에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5) 지난 5년간 두개의 중요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첫째는 1982년 발표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통령 산하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비공개를 법률로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둘째는 「언론편집기준심의위원회」가 1983년 발표한 보고서이다. 이것은 동위원회가 1976년 사생활관련문제에 대한 편집인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했던 조사를 1983년 재실시하여 비교한 것이다. 7) 이름과 주소를 공개할 경우 곤경에 빠질지도 모르는 두 여성의 신원공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편집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1976년 조사대상편집인 중 48.3%가 그래도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1983년에는 22.9%만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8)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야 미국언론계 내에서 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문의 기본방침에 대한 가설이나 신원공개방법과 발행부수와 관계에 대한 가설 등을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대신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미국신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원과 다른 일상적인 문제관련자의 신원을 각기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 (2) 만약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에 관한 기본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해왔는가?
- (3a) 몇 가지 사례로 제시되듯이 범죄피해자가 죄없는 개인일 경우 편집인은 피해자의 신원공개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3b) 그러한 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할 경우 편집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 (4) 신문의 발행부수와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에 대한 신문의 기본방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5)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점차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향에 대해, 특히 공중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편집인들은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1983년 미국 AP 통신계열사 편집국장연합회의 조사에 응했던 일간신문편집인 205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냈다. 설문지 회수율은 54.6%였다. 조사대상신문은 「편집인과 발행인」지의 국제연감(Editor & Publisher International Year Book)9)을 보고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선택하였다. 발행부수도 참조하여

- ① 10만부 이상,
- ② 5만부 이상 10만부 미만,
- ③ 2만 5천부 이상 5만부 미만,

④ 2만 5천부 미만을 발행하는 신문 집단들로부터 각기 고르게 선택했다. 발행부수는 「편집인과 발행인」지의 주소록(E&P directory)을 참조했으며, 네 집단의 숫자를 고르게 하기 위해 특정 주에 네 집단에 속하는 신문 중 어느 하나가 없을 경우 다른 주에서 그러한 신문을 하나 더 선택하였다. 앞서 제기한 연구문제 중 처음 두 가지는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신문의 기본방침과 지난 5년간 그 방침에 있어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제기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질문을 하여 조사하였다.

(1) 스미스 부인은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동일인 소행의 연쇄사건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2) 스미스 부인의 딸이 피살되었다. 경찰은 그녀가 그 도시에서 발생한 젊은 여성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3) 스미스 부인이 유괴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사히 도망쳐 나왔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당신은 경찰보고서를 통해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다.

(4) 스미스 부인은 강도가 침입했던 일용잡화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돈을 내놓으라는 강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강도들은 도망갔으며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각 사례에 대해 만약 경찰이나 범죄피해자 혹은 그 가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편집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였다. 사생활의 권리와 공중의 알 권리 사이의 갈등에 대한 편집인의 철학적 성향을 3개의 질문을 통해 조사했으며 그들이 편집하는 신문의 크기와 유형, 즉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등을 2개의 질문으로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인 문제관련자의 경우 그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III. 연구결과

조사대상이 된 신문의 거의 반 정도(46%)가 사건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게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외에 24%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었으며, 25%는 다소 피상적으로 구역번호나 넓은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한 신문의 반 이상이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바꾸었음이 밝혀졌다. 거의 40%의 신문이 5년 전보다 주소를 덜 공개하고 있었으며, 20%는 이름을 덜 공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32%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범죄사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이 범죄유형을 달리 가정하고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폭행사건의 경우 응답자의 90%가 이름과 주소 모두를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79%가 주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55%가 주소를 보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괴사건의 경우 신문은 이름만을 공개하거나(45%), 이름과 주소 모두를 보도하지 않는(22%)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36%가 이름만을 보도하겠다고 답했으며 38%가 이름과 주소 모두를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경향은 강도사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응답자의 47%가 이름만 보도하겠다고 밝혔고, 40%가 이름과 주소를 모두 보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 숫자는 26%와 60%로

달라졌다. 가정된 범죄사례 중 하나는 미국 AP 통신계열사 편집국장연합회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10) 두 연구 모두에 있어 상점종업원 이 강도를 당했으며, 신문이 인쇄되는 순간까지 범인들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가정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가 신문사 측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었다.

미국 AP 통신계열사 편집국장연합회의 1976년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중 48%가 이름과 주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1983년의 조사에서 23%로 떨어졌다(<표 1> 참조). 현재의 이 연구에서는 9%만이 이름과 주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1983년에 65%의 응답자가 종업원의 이름만을 보도하겠다고 답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47%가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답하고, 40%가 이름, 주소 모두 보도하지 않고 단지

「종업원」이라고만 밝히겠다고 답했다. 대체로 응답자 중 65% 이상이 일상적인 문제의 보도에 있어 관련자의 주소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가 구역번호를, 15%가 주변 지역명을 보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편집인들은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을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표 2> 참조). 그러나 그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도하지 않는 경향은 공중의 알 권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과 매체가 피해자보도에 보다 신중해지지 않으면 공중이 매체에 제한을 가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로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졌다. 편집인의 철학과 그들이 피해자의 신원공개보도문제를 다루는 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의 신원비공개경향이 공중의 알 권리와 상충된다고 보는 편집인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다 많이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한 편집인은 신문이 피해자의 주소를 밝힘으로써 공중이 얻는 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중은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특히 범죄가 바로 그들의 이웃에서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알아야만 한다.」 한편 다른 편집인들은 공중의 알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 혹은 필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발생장소나 피해자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과 안전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짊어질 책임의 경중을 신문은 잘 알아야 한다.」 범죄피해자 신원의 비공개경향이 공중의 알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집인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덜 공개하고 있으며, 범죄사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답변했다(<표 3>참조). 그러나 앞서 논의된 일용잡화상점 강도사건의 경우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편집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밖에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찬성하는 편집인들 중 93%가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83%가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도사건의 경우 이들 중 51%가 피해자의 이름만을 보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37%가 피해자의 명칭을 「종업원」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1> 1976 번 1983 번, 1985 핀 연구의 비교: 강도 피해자의 신원공개보도에 관한 편집인 대상설문조사

(%)

응답내용	1976년	1983년	1985년
이름과 주소를 보도한다.	48.3	22.9	9.1
이름만 보도한다.	36.7	64.7	47.3
이름과 주소를 모두 보도하지 않는다.	11.6	12.4	40
	N=60	N=105	N=110

<표 2> 3 가지 의견에 대한 편집인들의 응답

(%)

의견	동의	약간동의	중립	약간부정	부정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권리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 찬성한다. 신문은 범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중에게 노출된 개인의 사생활을 더욱 존중해야한다.	55.4	30.0	4.5	5.4	2.7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도하지 않는 경향은 공중의 알권리와 상충된다.	11.8	34.5	9.0	20.0	21.8
언론이 범죄피해자의 주소나 공공기록에 속하는 다른 신중성을 요하는 사상의 보도에 보다 신중해지지 않는다면 범죄피해자에 관한 어떤 것들이 보도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공중이 걱정, 제한 할 것이다.	19.0	27.2	13.6	11.8	25.4
N=110					

<표 3> 알 권리에 대한 편집인들의 관점과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

N = 110

(%)

의견	이름과 주소를 보도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동의	22.4	25.2
중립	0.6	8.4
부정	6.5	36.4

IV.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의 결과 범죄피해자의 신원이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신문은 신원보도로 인해 위협에 처하게 되거나 다른 문제가 야기될 지도 모르는 범죄피해자들의 처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신원보도를 범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편집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이 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된 사례에 대한 편집인들의 응답을 조사함으로써 얻어낸 가장 중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는 그들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보도하는데 이끌릴지라도 기꺼이 피해자의 이름을 덮어두고자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경우 죽은 소녀의 어머니가 사는 집주소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던 편집인들 중 23%가 만약 그 어머니가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주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도와 유괴사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편집인들 대부분(85%)이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은 비공개경향이 공중의 알 권리와 상충된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피해자를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언론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하려는 태도를 공중이 직접 나서서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편집인들의 철학은 피해자보도에 있어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피해자 비공개경향이 공중의 알 권리를 위협한다고 보는 편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집인들 보다 범죄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더 많이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 1) "Victims Names Right to know vs. Right to Privacy", in 1983 APME Report: (Dallas Associated Press managing Editors 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 1983), p.6.
- 2) "Newspaper Credibility: Building Reader Trust " (Miami 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1985), p.16.
- 3)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Final Report (Washington, D. C. The Task Force, 1982), p. 19.
- 4) 1983 APME Report, op. cit.
- 5) See for example Susan Cohn. "Protecting Child Rape Victims from the Public and Press after Globe Newspaper and Cox Broadcasting",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51 269-289(1983):"High Court Backs Naming of Rape Victims in the News" Editor & Publisher, 108: 11,38(March 8,1975) , William Heiman. "Public Policy Issues in Prosecution of Sexual Assault Cases, " The Prosecutor, 17 27-31 (Winter 1983)
- 6)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op. cit., p. 19.
- 7) Privacy and Conscience (New York Associated Press Managing Editors Professional Standards Committee, 1976)
- 8) Paul La Recque, "Editors Changing on Crime Information", in 1983 APME Report, op. cit., p.14
- 9) Brown, Robert U., editor. Editor & Publisher International Yearbook, (New York' Editor & Publisher co., 1982)

10) 두 가지 사례에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은 있다. 미국 AP 통신계열사 편집국장연합회의 연구에 제시된 사례에서는 병원의 선물가게에서 일하는 두 여성이 피해자였다. 강도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현재의 이 연구에서 강도피해자는 일용잡화상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다. 그녀는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종업원의 이름이 신문사측에 알려졌다.